

대전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나212209 판결 [건물명도 등]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나21220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44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4. 16.

판결선고 2024. 4. 30.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44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의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호, 판사 조준호, 판사 황성욱

별지

부동산의 표시 및 평면도면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대지: 81.3평

면적: 268.42㎡

위 건물 중 1층 상가 40㎡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



